

대학원 파운드리공학과 학사 운영 내규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교과 과정 운영, 종합학력자격시험, 논문심사, 기타 학사 운영 전반을 규정하여 대학원 파운드리공학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파운드리공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입학시험)

입학시험에 관한 문제 출제, 점수 배정, 합격 사정, 기타 시험 운영은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입학시험 과목)

시험은 기초 학력 테스트에 주안점을 두며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이수 과목, 이수 학점)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

제6조 (학점 제한)

학점(연구 학점 제외)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교육과정>

제7조 (연계과정 운영)

연계과정 신청 시기 및 석·박사 통합과정 수업연한은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대학원 전공분야 및 핵심과목)

(가) 파운드리공학과의 핵심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 전공기초

물리전자특강, 반도체공학, 확률및랜덤과정, 집적회로공학, 반도체소자제작공정, 재료과학개론, 유변학

- 전공심화

고체물리학특론, 박막물성론, 전자재료특강, 집적회로공정, VLSI 설계, 패키지공정, 품질공학, 열및물질이동특론

- 특성화교과목

1) 전공정 : 반도체공정실습, 반도체재료및공정분석실습, 반도체공정장비공학, 반도체특성분석, 대규모집적회로공정및설계, 차세대반도체파운드리인턴십

2) 후공정 : 반도체특성분석, 반도체특성평가실습, 반도체품질관리, IC Tesing 및 신뢰성검증, 전자패키징기술, 차세대반도체파운드리인턴십

(나) 핵심 교과목은 각 전공분야 소속 교수들의 동의를 얻어 전공분야 대표교수가 요청 시 대학원 주임교수가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트랙 이수 기준의 충족)

(가) 트랙 이수 기준의 충족 : 학과는 첨단 산업의 고급인재 수요에 맞추어 트랙을 운영하며, 현재 운영중인 트랙은 다음과 같다. 차세대반도체패키징 트랙.

(나) 각 트랙의 이수 기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차세대반도체패키징 트랙 : 학과는 차세대 반도체패키징 트랙을 운영하며, 트랙 교육과정 중 총 15학점을 이상 이수하며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교과목 중 아래 교과목을 포함할 경우 이수기준을 충족함으로 한다.

- 차세대반도체패키징 기초공통 1과목(3학점)
- 차세대반도체패키징 전공기초 1과목(3학점)
- 차세대반도체패키징 전공심화 1과목(3학점)
- 차세대반도체패키징 융합 1과목(3학점)
- 차세대반도체패키징 실무 1과목(3학점)

〈종합 학력 시험〉

제10조 (신청 대상자 기준)

신청 대상자 기준은 석사: 전공 18학점 이상, 박사: 전공 27학점 이상, 통합: 전공 45학점 이상 취득 시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 방법)

종합학력시험 시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석사: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박사: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 ②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시행하며,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 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평가를 하고,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이다.

제12조 (석사과정 종합학력시험 면제)

- (가) 석사과정 종합학력시험 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국내 또는 국제 학술회의 논문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발표 1편, 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이상의 논문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게재(예정) 1편 이상

- (나) 발표 및 게재(예정)는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하며, 재학 기간 중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13조 (박사과정 종합학력시험 면제)

- (가) 박사과정 종합학력시험 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국내 또는 국제 학술회의 논문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발표 2편 이상, 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이상의 논문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게재(예정) 1편 이상

- (나) 발표 및 게재(예정)는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하며, 재학 기간 중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 박사과정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종합학력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해당 학기 종합학력시험 신청 전에 전 학년 성적 증명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응시자격 유무를 판정하고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응시 하도록 한다.

제14조 (외국어시험)

- (가) 외국어 시험은 영어, 한국어 2개 과목만 시행한다. 단, 내국인 학생은 영어, 외국인 학생은 영어와 한국어 중 1과목을 선택한다.(영어 선택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만 가능하다.

(나) 외국어 시험 면제

- ① 외국어 시험 면제는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면제 기준은 대학원 규정에 따

른다.

② 해외 수학(연수) 국가 등에 의한 면제기준 및 제출서류는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논문 제출 요건)

다음의 요건을 가진 자는 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가) 석사과정

필요한 수업 연한 및 학점취득 요건은 대학원 학칙에 따라 취득하고 외국어 자격시험과 종합학력자격시험에 합격 요건을 만족시킨 자로서, 국내 또는 국제 학술회의에 주 논문과 동일 분야의 논문을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1편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이상의 논문에 1편 이상 게재(예정)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논문만 인정한다.

(나) 박사과정

① 필요한 수업 연한 및 학점취득 요건은 대학원 학칙에 따라 취득하고 외국어 자격시험과 종합학력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재학 기간 중 지도교수와 공동 명의로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에 2편과 국제 학술회의에 1편 이상을 게재(예정) 및 발표하거나, 또는 국제 학술지 (sci/scie/scopus 등재 학술지) 1편과 국제 학술회의에 1편 이상을 게재(예정) 및 발표하여야 한다. 단, 국제 학술회의의 개최 장소는 국내외를 포함한다. 발표논문은 반드시 주 논문과 동일분야, 동일 계통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16조 (논문 심사 위원회 구성 및 논문 발표회)

(가) 석사과정

① 석사과정 학생은 3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 심사 위원회를 별첨 양식에 따라 구성하고 이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사과정 학생은 각자의 논문 심사 위원 전원이 참석한 예비 발표회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생은 논문 예비 발표 신청 전에 예비 발표 논문과 전 학년 성적증명서, 외국어 시험 합격 증빙 서류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 교수는 예비 결과와 함께 제반 서류를 주임 교수에 전달한다.

③ 논문 최종 심사는 대학원에서 정한 기일에 논문심사위원회가 모두 참석한 논문 발표회에서

발표한다.

④ 내규에 의한 외부 발표 논문은 논문 최종 심사 신청 이전까지 개최된 학술회의에 발표하고 별첨 양식(외부 발표 논문 목록)과 함께 증빙자료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박사과정

① 박사과정 학생의 논문 심사 위원회 구성, 논문 예비 발표 및 최종 심사는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 단, 최종 심사 이전에 과내 전체교수가 참석한 예비 발표회를 가져야 한다. 이 예비 발표회를 통과하는 것으로 대학원 규정상의 예비 발표를 대신한다. 예비 발표를 통과하여야만 최종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예비 발표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예비 발표회를 다시 가져야 한다.

② 내규에 의한 외부 발표 논문들은 학회지 논문의 경우 논문 최종 심사 신청 이전까지 게재 증명서를 득하여야 하며, 학술회의 논문은 심사 신청 이전까지 개최된 학술회의에 발표되어야 한다. 이들의 증빙 자료를 별첨 양식(외부 발표 논문 목록과 함께 논문 심사 신청 이전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과 운영위원회〉

제17조 (교수회의)

대학원 파운드리공학과 전체 교수로 구성한다. 교수 회의의 의결은 비밀 의결을 원칙으로 하며, 만일 가부 동수일 경우는 주임교수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 (내규 개정 및 미규정 사항의 결정)

본 내규는 대학원 규정 또는 대학원 교과 과정 개정 시 또는 필요시 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대학원 파운드리공학과 전체 재직 교수의 1/3 이상 찬성으로 교수 회의에서 개정할 수 있다.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① 본 내규는 202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